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3164
----------	------

2025년 12월 19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김원태 의원 외 15명

나. 제안일 : 2025년 10월 19일

다. 회부일 : 2025년 10월 23일

라. 상정일 :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8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원태 의원)

가. 제안이유

- 광화문광장은 연중 다양한 문화·예술·시민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대표 광장임
- 최근 행사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규모 또한 확대됨에 따라, 주최측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확대해 행사 주최 측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행사 운영과 시민 홍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기간을 개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 기간을 현행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에서 ‘90일 전부터 5일 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이는 서울광장 운영 기준¹⁾과 동일한 신청 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서울시 주요 광장·공공공간 간 사용허가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행사 주최자가 보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광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u>60일 전부터 7일</u>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등 공익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 ----- ----- ----- <u>90일 전부터 5일</u> ----- ----- -----.

1) 서울광장의 경우 광장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시설·무대 설치, 안전관리 준비 등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2년 11월 1일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신고 기간을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로 조정한 바 있음

나. 검토 내용

- 「지방자치법」 제13조²⁾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와 광장의 설치·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사용허가 절차·여건·기간을 구체화하는 것은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광화문광장에 대한 관리·운영은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가 총괄하고 있으며,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목적·일시·사용인원·안전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광화문광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기준 중 신청 가능 기간을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한(최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대규모·복합행사의 충분한 사전 준비를 지원하고 하한(최소)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완화하여 비교적 단기간 준비가 가능한 행사의 신청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 광화문광장은 2022년 8월 재개장 이후 2025년 10월 말까지 총 238건의 사용허가가 이뤄지는 등 연중 다양한 문화·예술·시민 행사가 상시적으로 개최되는 서울을 대표하는 광장으로 자리 잡았으

2)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자. 공유재산(公有財產) 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며 최근에는 국제행사, 대규모 시민축제, 각종 캠페인 등 행사 유형과 규모가 확대되면서 주최 측이 기획·섭외·안전대책 마련 등을 위해 보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광화문광장 신청허가 현황 〉

구 분	2022.8	2023	2024	2025.10
허가 건 수	46	73	60	59

출처 :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서울광장과 동일하게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로 확대·조정할 경우, 사용자 측은 장기간에 걸친 프로그램 기획, 출연자 및 협력기간 섭외,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사전 홍보 및 참여자 모집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참여기회 확대 및 행사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관리자 측은 연간 행사계획을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 조정하여 광장 사용 일정 간 중복·충돌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관리 등 관계 부서와의 협조를 포함한 행정 지원 체계를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장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청기간 상한이 90일로 확대될 경우 향후 행사 수요 증가 시 특정 단체의 장기 선점 등으로 사용 기회가 편중될 우려도 있는 바, 허가 심사 과정에서 공익성, 행사 성격, 규모, 기존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필요 시 세부 운영지침을 통해 공정한 사용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광화문 광장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광장 이용 편의와 행사 준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청기간 상한 확대로 향후 행사 수요 증가시 특정 단체의 장기 선점이나 특정 시기에 행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등 사용기회 편중과 더불어 광장의 개방성과 공공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는 바, 허가 심사 과정에서 공익성, 행사 성격·규모, 기존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용허가 기준과 일정 조정 원칙을 명확히 하는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적용함으로써 공정한 사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1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5조(사용허가 신청) 제1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 시 시장에게 사용허가서 제출기간을 변경(60일 전부터 7일 → 90일 전부터 5일)하고자 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김진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64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19일
발의자: 김원태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고광민, 김길영,
김영철,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민병주, 윤기섭,
윤종복, 이성배, 임춘대,
허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15명)

1. 제안이유

- 광화문광장은 연중 다양한 문화·예술·시민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대표 광장임.
- 최근 행사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규모 또한 확대됨에 따라, 주최측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이에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확대해 행사 주최 측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행사 운영과 시민 홍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기간을 개정함(안 제5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60일 전부터 7일”을 “90일 전부터 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5조(사용허가 신청) 제1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 시 시장에게 사용허가서 제출기간을 변경(60일 전부터 7일 → 90일 전부터 5일)하고자 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